

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 이유

- 형사소송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송관계인의 기일 외 주장 등 부적법한 소송행위 금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함

3. 주요 내용

- 소송관계인은 심문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구술, 전화, 휴대전화 문자전송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,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·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(안 제177조의2제1항)
- 재판장은 이를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음(안 제177조의2제2항)

4.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7조의2 (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)

- ① 소송관계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, 전화, 휴대전화 문자전송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,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·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77조의2 (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)</u> <u>① 소송관계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, 전화, 휴대전화 문자전송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 구속,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·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②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.</u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358